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9명
2. 입소대상
 - 가.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 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3.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 2) 보호자를 통한 모집
 - 3)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및 대상자

성남두레복지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기준일	2025.1.1
식사재료비	1일(3식) 6,000원 × 31일 = 186,000원
간식비	1일(2회) 2,000원 × 31일 = 62,000원

- 1)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 2)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3) 특별 보호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 이용료를 산정한다.

기준일	입소비용	식간식비	
2025.1.1	79,240원(1일기준)	식대	1일(3식) 6,000원 × 31일 = 186,000원
		간식비	1일(2회) 2,000원 × 31일 = 62,000원
2025.1.1	79,240원(1일기준)	식대	1일(3식) 6,000원 × 31일 = 186,000원
		간식비	1일(2회) 2,000원 × 31일 = 62,000원

라. 입소비용(2025.01.01. 기준)

가) 기준수가(입소자 2.1명당 1명)

※ 식사는 3식/1일이며 간식은 2회/1일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1일당	월급여액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비급여분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총금액)
			일반 (20%)	감경 (12%)	감경(8%)		
1등급	90,450	2,803,950	560,790	336,470	224,31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20%= 808,790원 12%=584,470원 8%=472,310원
2등급	83,910	2,601,210	520,240	312,140	208,09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20%= 768,240원 12%=560,140원 8%=456,090원
3등급	79,240	2,456,440	491,280	294,770	196,51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20%= 739,280원 12%=542,770원 8%=444,510원
등급 외	79,240원	2,456,440	10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100%=2,704,440원

나) 한시적 수가(입소자 2.3명당 1명)

※ 식사는 3식/1일이며 간식은 2회/1일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1일당	월급여액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비급여분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총금액)
			일반 (20%)	감경 (12%)	감경(8%)		
1등급	86,030	2,666,930	533,380	320,030	213,35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20%= 781,380원 12%= 568,030원 8%= 461,350원
2등급	79,810	2,474,110	494,820	296,890	197,92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20%= 742,820원 12%= 544,890원 8%= 445,920원
3등급	75,360	2,336,160	467,230	280,330	186,89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20%= 715,230원 12%= 528,330원 8%= 434,890원
등급 외	75,360	2,336,160	100%			식대 6,000=186,000원 간식비2,000=62,000원	100%=2,584,160원

4.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해제

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1)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
-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 아. 아·미용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 없이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 가.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 나.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라.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3.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5) 3~4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나.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4) 그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입소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시설 안전 점검 및 소방관리

가. 가스안전점검 : 년 1회(가스안전공사) 이상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나. 전기안전점검 : 년 1회(전기안전공사) 이상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다. 소방안전점검은 위탁 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 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을 한다. -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은 위탁 업체로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1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가. 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 나.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시설장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 <중사자 상해보험 가입부분 추가>

2. 업무상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설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제 보상을 행한다.

3.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4. 업무외의 재해

시설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